

# 技術導入政策과 外國人特許登錄



李 佳 鍾

<國民大 教授·政博>

## ① 特許制度의 理論的根據

特許란 國家가 技術發明者에게 賦與한 一定한 特權을 말한다. 1474年 Venice 共和國에서 처음으로 制定된 特許法은 500餘年이 지난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法制度이다.

특허제도를 채택하여 기술발명자에게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는 理念的 그리고 理論的 根據는 多樣하나 대체로 自然法的 理論, 道德論, 그리고 經濟的 必要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自然法理論은 새로운 아이디어創始者는 固有的 天賦的 權利로써 그것을 所有하고 使用할 수 있는 財產權의 權限을 가지며 實定法은 다만 이러한 自然法的 權利를 보호할 수단과 方法을 定하는 것이라고 한다. 1791年에 制定된 불란서 특허법을 提案한 Stanislas de Bouffer는 그 法이 政府의 干涉을 위한 것이 아니라 自然法的인 財產權의 一部로써 侵害로부터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制度라고 說明했다.

道德論者들은 特許制度는 社會가 기술발명자의 노력에 대한 代價補償을 확보하여 줄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대한 批判은 첫째, 기술발명의 노력에 대한 代價補償이 반드시 物質的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되었으며 둘째, 기술개발은 오랜 동안 여러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蓄積된 經驗 및 知識의 產物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努力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補償은 없으며 셋째, 여러사람이 동시에 만들어낸 발명에 대하여 어느 한사람에

계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연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公平하지 못하다고 主張한다.

오늘날 現代社會에서 특허가 보편적으로 國家의 實定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특허의 經濟的 必要性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經濟的 必要性에 입각한 특허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자연법론자나 도덕적보상론자보다 實利의이며 現實的인 面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는 독점권을 許與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권이 부여된 이유는 발명을 유도하기 위하여 必要한 刺戟劑(incentive)이며 발명의 노력에 대한 補償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刺戟劑 및 補償策은 발명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발명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독점권)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그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진 社會的 利益이 더 크기때문에 社會적으로 正當性이 있다고 말한다.

## ② 外國人特許登錄의 問題

이러한 理論的 主張에 대하여 과거 몇세기동안 아무런 理論的 反論도 없었으며 特許의 社會的 利益과 損失에 대한 진지한 분석도 없었다. 그러나 2次大戰 이후 세계가 갑자기 좁아지고 국가간의 통상이 急増함에 따라 特許의 國籍問題가 심각히 論議되기 시작하였으며 特許制度의 社會的 利益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개발도상국가의 외국인특허등록과 기술

이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논의되었다. 一聯의 國際聯合(UN) 및 국제연합전문기구에서 논의된 문제는 國際特許制度가 개발도상국가의 기술개발활동을 저해하며 더군다나 국가개발에 必要한 技術移轉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특허의 독점권이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예의 분석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국제연합의 한 보고서는 「국제특허제도는 개발도상국가의 국내 발명활동을 자극하기 보다 외국 특허권자의 독점적 특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평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개발도상국가에 등록된 외국인 특허는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있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특허등록통계를 분석해보면 오늘날 국제특허제도의 성격의 일면을 볼 수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공업국가중 미국을 중심으로 한 큰 나라들은 외국인특허등록비율이 50%내외로써 그 나라의 기술개발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선진공업국가중 소국가들은 60%에서 85%까지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은 거의 90%이상의 외국인특허등록율을 기록하고 있다.

<表 1> 各國의 外國人特許登錄比率(1979)  
單位: %

大工業國	小工業國	開發途上國
美國 37.4	캐나다 94.0	이집트 98.4
日本 20.9	덴마크 88.2	香港 97.1
西獨 51.7	핀란드 77.1	멕시코 92.8
프랑스 72.2	이스라엘 84.5	필리핀 90.4
英國 79.9	네덜란드 86.8	터키 92.6
	뉴질랜드 85.6	베네수엘라 94.1
	노르웨이 87.1	콜롬비아 97.7
	스웨덴 74.0	포르투갈 94.9
	스위스 75.2	

자료: 한국특허협회

흥미로운 것은 외국인특허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규모(예컨대 GNP)와 경제성장율은 크다는 것이다. 일본이 경제규모에 있어서 서독이나 영국보다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특허 비율도 서독이나 영국보다 크며 외국인특허비율은 그만큼 적다. 이는 일본의 경제가 양적인면 뿐만아니라 질적 구조적으로도 그만큼 전진했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대국으로 성

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특허제도는 마치 외국인을 위한 제도인것처럼 외국인의 특허등록은 높다. 더군다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통계숫자상에 나타나 있는 외국인특허등록의 비율이라기 보다 10%내외의 자국민특허가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이다. 개발도상국가에 등록된 국내인 특허의 대부분은 선진공업국가처럼 企業의 소유가 아니라 個人의 소유이며 이 個人所有의 特許는 企業所有의 特許보다 實際經濟的活用度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보고서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국내인의 특허가 경제적, 기술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특허에 의한 생산판매액 혹은 부가가치의 측정)하고 국내인의 특허의 비중은 전체등록된 특허의 1%도 못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과연 개발도상국가의 특허제도는 누구를 위한 그리고 누구의 발명의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등록한 특허는 70年代 중반까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1973년만 하더라도 외국인 특허의 비중은 5.5%에 불과했으며 1974년에는 31.5%였다. 앞의 다른나라의 예와 비교하여 볼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특허등록비율이 적은 것은 우리나라의 발명활동이 활발해져가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특허를 등록할 경제적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며 또한 특허당국의 외국인 특허등록에 대한 정책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1975년이후부터 외국인특허등록건수는 급성장하여 1975년의 52.0%, 1976년의 76.0%에서 1979년에는 81.8%와 1980년에는 87.2%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1, 2年 동안의 급격한 변화는 60年代의 小工業國家들의 外國人特許登錄의 水準을 이미 벗어나서 개발도상국가들이 현재 겪고있는 外國人技術의 支配와 蠱惑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980年代의 중반까지 외국인특허등록비율은 90~95%를 넘어서게 될것 같다. 더군다나 특허의 경제적 活用度를 감안한다면 국내인특허의 경제적 비중은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처럼 1%이하가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狀況의 變化는 앞으로 1980年代를 맞아 우리나라

<表 2>

우리나라의 内外國人特許登錄比率 (1973—80)

단위 : 건수

구분 \ 년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총 등록건수	199	302	442	379	273	427	1,419	1,694
내 국 인	188	227	212	191	103	133	258	217
외 국 인	11	95	230	288	170	294	1,161	1,474
외국인비율(%)	5.5	31.5	52.0	76.0	62.3	68.8	81.8	87.2

자료 : 특허청

에 심각한 문제점을 示唆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기술도입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 ③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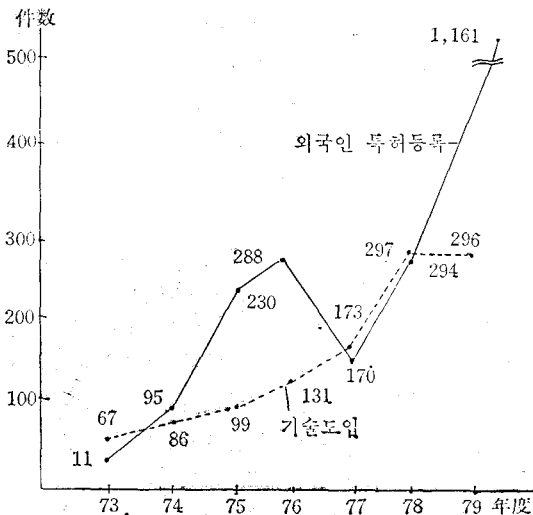
외국인 특허등록은 技術移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전되는 기술은 특허가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前者는 대체로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대가가 비싸고 계약조건이 까다로우며 기술제공자가 독점권 확보를 위하여 기술도입국에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이다. 後者의 경우는 法的으로 保護되지 않는 know-how나 기타 技法을 移轉하는 것으로서 그 性質上 特許로 등록될 수 없는 기술, 특허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오래된 기술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대체로 말해서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술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장가치가

사양길에 접어든 오래된 기술이거나 특허가 부각되지 않은 know-how의 기술이 大宗을 이루었다.

圖 1에서 1973—78년간 기술도입건수에 비해 외국인특허등록건수가 적거나 아니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단적으로 특허가 따르는 고도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79년과 1980년에 외국인특허등록이 각각 1,161건과 1,477건으로 1978년에 비해 거의 3배이상 급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도입에 특허가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특허가 많이 등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적 및 정책적 변화에 起因한 것이다. 78년 4월에 시작된 정부의 기술도입자유화조치와 국제공업소유권동맹(파리협약)에의 가입, 그리고 이에 따르는 특허법의 개정이 외국인의 특허등록殺到를 불러온 것이다. 이러한 기술도입자유화조치와 관련하여 외국인인 우리나라에 그들의 특허를 등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기업에 특허실시권을 비싸게 팔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기업이 특허기술을 모방하거나 다른 외국인기업이 유사한 특허기술을 우리나라기업에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잃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자는 방어적 정책이다. 사실 이 두가지 이유중 어느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차지하게 될는지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기술이전과 상거래의 관행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後者의 경우가 支配的인 現象이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例外는 아닐 것으로 내다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특허등록의 급증이 기술 도입 특히 고도의 새로운 기술을 촉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1978년이래 몇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자유화조치를 단행하여 1981년 현재 거의 모든 민간기술도입은 자동인가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정부는 기술도입자유화는 중화학공업이 필요로 하는 고도의 새로운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1979—80년 동안의 기술도입실적과 외국인특허등록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기술도입자유화조치는 정부가 믿었던 만큼 선진기술도입을 촉진하지는 못한 것 같다. 우선 통계숫자를 비교하여 보면 1978년의 기술도입 건수는 297건이었으나 1979년은 오히려 한건이 준 296건에 그쳤으며 반면에 동기간동안 외국인특허등록만 거의 3배 증가했었다는 사실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 4 展望 및 結論

이 글에서 우리는 외국인특허등록과 기술이전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아직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정확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경제는 80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次元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의 문제는 이 새로운 次元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분석이 어느정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여태까지의 安易한 樂觀論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잡한 새로운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상황의 변동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외국인특허등록의 급증은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 실용화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외국인의 상품을 독점판매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외국인특허등록은 기술도입 자체를 저해할지도 모르며 더 중요한 사실은 국내의 기술개발의욕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기술도입자유화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경에 의한 압박, 그동안 관료의 기술도입에 대한 비능률적 혹은 불필요한 과잉통제 때문에 불가피했으며 또 썩 잘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국내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촉진할 어떤 정책적 처방은 기술도입자유화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ㄴ



## 第38回 工業所有權短期研修講座 開催

本會는 法改正에 參與했던 關係官과 關係專門家를 特別히 講師로 招聘하여 改正工業所有權 4法 및 同法施行令, 施行規則을 詳細히 解説하는 特講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이 機會에 讀者 여러분의 積極的이고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TEL 783-2237~9

日 字	時 間	講 義 主 題	講 師
7月21日 (火)	10:00~17:00	改正特許法, 實用新案法 및 同法施行令, 施行規則 解説	康 東 壽 (辨 理 士)
7月22日 (水)	10:00~12:00	//	//
//	13:00~16:00	改正意匠法 및 同法施行令, 施行規則 解説	金 垣 植 (特許廳意匠審査官)
7月23日 (木)	13:00~17:00	改正商標法 및 同法施行令, 施行規則 解説	金 寬 衡 (特許廳商標審査官)